

|        |             |
|--------|-------------|
| 의안번호   | 2200553     |
| 의 퇴 인  | 박선원의원       |
| 회 답 일  | 2024.08.02. |
| 추 계 번호 | 24D0715     |

# 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I. 재정수반요인

| 연번 | 조·항(조제목)                      | 주요내용                                                                                                                                                                                                                       | 비고   |
|----|-------------------------------|----------------------------------------------------------------------------------------------------------------------------------------------------------------------------------------------------------------------------|------|
| 1  | 안 제4조(월남전 참전군인 명예보상금 지급심의위원회) | 명예보상금 지급 대상여부, 명예보상금 산정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월남전 참전군인 명예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둠                                                                                                                      | 의무규정 |
| 2  | 안 제5조(명예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 등)    | 중전의 「군인보수법」 제1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 중 해당 월남전 참전군인의 복무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현재가치 환산방법 및 명예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의무규정 |

## II. 미첨부 등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

### 1. 근거 규정

| 연번 | 조·항(조제목)                      | 미첨부 근거 규정                                            |
|----|-------------------------------|------------------------------------------------------|
| 1  | 안 제4조(월남전 참전군인 명예보상금 지급심의위원회)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 2  | 안 제5조(명예보상금의 산정 및 지급 방법 등)    | •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 2. 상세 사유

- 제정안은 월남전 참전군인의 명예보상금 지급 대상여부, 명예보상금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월남전 참전군인 명예보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에 따라 인건비·운영비 등의 추가 재정소요가 예상됨

- 또한, 제정안은 월남전 참전군인에게 명예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해당 명예보상금이 지급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그러나 제정안은 명예보상금을 종전의 「군인보수법」 제1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외국 파견 군인에게 지급하는 근무수당 관련 규정 중 해당 월남전 참전군인의 복무 당시에 적용되던 규정을 각각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해당 규정은 아래와 같음
  - 종전 「군인보수법」 제16조(제16조 특별급여, 법률 제1338호, 시행 1963.5.1.)

각 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수행상 생명의 직접적인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특수기술자, 특수한 지역에 근무하는 자, 항공기 및 함정근무자 기타 특수한 훈련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 「해외파견군인의 특수근무수당 지급규정」(대통령령 제1895호, 제정 1964.7.28)<sup>1)</sup>

제1조(목적) 이 령은 국제연합 또는 외국의 파병 요청이나 동의에 의하여 국군을 외국에 파견하는 경우에 그 파견된 군인·군속에게 지급할 특수근무수당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액) 전조의 목적으로 외국에 파견된 군인·군속에게는 그 파견근무 기간 중 1일 근무에 대하여 **별표에 규정된 금액**을 수당을 지급한다.

제3조(기간의 계산) 수당지급의 기간계산은 임지에 착임 한 날로부터 귀국의 명을 받아 근무지를 떠나는 날 까지로 한다.

제4조~제6조(생략)

**【별표】** 근무수당액표(1일 근무)

이병(0.6), 일병(0.8), 상병(1.0), 병장(1.2), 하사(1.5), 중사(2.0), 상사(2.5), 소위(4.0), 중위(4.5), 대위(5.0), 소령(5.5), 중령(6.5), 대령(7.0) / \$

1)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기준액 일부 개정(1964. 9. 10), 「군인보수법시행령」이 제정(1965. 1. 27)되면서 「해외파견군인의 특수수당지급규정」을 흡수·통합하였고, 해외파병의 추가된 계급인 준장, 준위의 해외수당 추가하였으며, 이후 중장, 소장직위 신설, 하사 이하 하위직 수당을 인상하였음

- 제정안에 따른 명예보상금 추가 재정소요를 산정하기 위하여 월남전 참전 군인 연도별·계급별 인원, 명예보상금의 산정 방법에 따른 월 지급액, 당시 원화 표시 연도별 환율, 현재가치 환산 방법 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함
- 제정안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은 월남전 참전군인 및 그 유족으로, 국방부 자료에 따른 월남전 참전군인의 수는 345,994명이고, 계급별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sup>2)</sup>

[표 1] 월남전 참전군인 계급별 현황: 1964~1972년

(단위: 명)

| 구분   | 장 교 |       |        | 부사관<br>(준위 이하) | 병사      | 계       |
|------|-----|-------|--------|----------------|---------|---------|
|      | 장성  | 영관    | 위관     |                |         |         |
| 군인 수 | 97  | 5,762 | 20,614 | 55,226         | 264,295 | 345,994 |

자료: 국방부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그러나 제정안은 명예보상금을 월남전 참전군인의 복무 당시에 적용되던 해외 파견 근무수당을 준용하고 복무 당시 지급액 및 물가수준을 고려하여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하면서, 보상금의 산정 방법 및 현재가치 환산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구체적인 산정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현 시점에서 명예보상금을 신청하기 곤란하므로 이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데 한계가 있음

### Ⅲ. 부대의견

- 없음

2) 「통계로 본 베트남전쟁과 한국군」(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7.12.)에 따르면 324,864명이라고도 하나, 본 추계에서는 국방부가 2024년 7월 예산정책처 자료요구에 회신·제공한 ‘월남전 참전군인 계급별 현황:1964~1972년’ 자료를 적용

## IV. 작성자

### □ 성명

|         |     |     |
|---------|-----|-----|
| 국회예산정책처 | 분석관 | 과장  |
| 행정비용추계과 | 전수연 | 김안나 |

### □ 대표연락처

|     |              |                       |
|-----|--------------|-----------------------|
| 성명  | 전화번호         | 이메일 주소                |
| 전수연 | 02-6788-4667 | syjeon@assembly.go.kr |